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장

제 62 호 2015. 6.25(목)

조 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

규 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4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5

훈 령

○남원시 공약관리 규정.....7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11

○남원시 성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16

○남원시 성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17

공 고

○남원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21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36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65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051명”을 “1,0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26명”을 “1,03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처음으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55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06	-				
4급	5	3	1	1		
5급	52	22	2	2	3	23
6급 이하 계	948	-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총정원 : <u>1,051명</u></p> <p>2. 집행기관의 정원 : <u>1,026명</u></p> <p>3.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p> <p>1. ----- <u>1,055명</u></p> <p>2. ----- <u>1,030명</u></p> <p>3. (현행과 같음)</p>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25일

남원시 규칙 제 551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처음으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남원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은 정원 규칙 별표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25일

남원시 규칙 제 552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읍·면·동장의 직급(제16조 관련)

기관별	직위	직급
사매면사무소	사매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25일

남원시 훈령 제 341 호

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장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업”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원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공약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하며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공약총괄부서의 장이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 ①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시장 공약사항 검토의견서에 따라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추진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4. 연도별 투자 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③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리 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확정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추진부서의 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상황,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행계획의 총괄 개요
3. 필요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추진계획(분기별·연도별)

③ 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공약이행

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 변경)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공약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행계획은 즉시 공약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
3. 그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평가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대표성 있는 남원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평가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자체평가) ①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부진사업의 경우 추진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약 평가는 공약사항이 확정 당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사업별 진척정
도, 사업비 확보, 연차별 계획 이행 등의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외부평가)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11조(결과의 공개)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행계획 수립·변
경, 추진상황 및 공약 이행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2조(수당 등) 평가단의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25일

남원시 훈령 제 342 호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으로 구성한다.

제3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남원시장,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로 하고, 회장은 시·군 직제 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체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권과 표결권을 갖는다.

제4조(사무소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처리사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동부권 연계 대선공약, 국책사업 발굴 대응에 관한 사항
2. 동부권 개발 국·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국·도정 운영에 전략적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동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이 필요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교류 활동 및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려는 안건이 있는 경우 회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한 후에 안건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안건의 의결은 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되,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

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참석) ① 회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참석 요청할 수 있다.

② 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주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협의회는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미합의 사항 조정) 회장은 회의에 두번 이상 상정된 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폐기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되, 안건의 성격에 따라 안건과 관련된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안건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간사는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지출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잔액을 다음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할 때에는 위원 모두의 찬성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동부권 6개 시·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각 의회의 의결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25일

남원시 훈령 제 343 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4,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처음으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설주사로, 농촌활력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노암동) 노암동에 주민생활담당·복지민원담당을 두고, 각 담당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담당요원)로 보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 후 처음으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례) 각 담당의 명칭 및 <u>직급에 관하여</u>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u>규정에</u> 정하는 바에 <u>의한다</u>.</p>	<p>제2조(적용례) ----- --<u>직급은</u>----- ----- -----<u>규정에서</u>----- -----<u>따른다</u>.</p>
<p>제4조(기획실) 기획실에 기획담당·예산담당·법무담당·서울사무소담당·<u>규제개혁추진단장</u>을 두고, 기획담당·<u>규제개혁추진단장</u>은 각각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예산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법무담당·서울사무소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p>	<p>제4조(기획실)----- - ----- --- -----<u>규제개혁</u> <u>당</u> -----<u>규제개</u> <u>혁</u> <u>담당은</u>----- -- ----- --.</p>
<p>제17조(농정과) 농정과에 <u>농업행정담당 · 귀농귀촌담당 · 쌀산업담당 · 농촌개발담당 · 농업시설담당</u>을 두고, 농업행정담당 · 쌀산업담당 · 농촌개발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p>	<p>제17조(농정과) -----<u>농업</u> <u>행정담당 · 귀농귀촌담당 · 쌀산</u> <u>업담당 · 농촌개발담당 · 농업시</u> <u>설담당 · 농촌활력담당</u>----- ----- -----</p>

주사로, 농업시설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귀농귀촌담당은 지방행정주사 · 지방공업주사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지방행정주사 · 지방공업주사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농촌 활력담당은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로-----
 -.

제52조(노암동) 노암동에 주민생활담당을 두고, 주민생활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보한다.

제52조(노암동) 노암동에 주민생활담당 · 복지민원담당을 두고, 각 담당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담당요원)로 보한다.

입 법 예 고

남원시 공고 제 2015-785호

「남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2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문화예술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마.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바.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사. 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붙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07),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장미선 (전화 : 620-61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5.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마.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바.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사. 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5. . ~ 2015. 6.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예술”이란 제1호의 문화예술 중에서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시책
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문화예술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9조(설치)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
2.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직을 상실한 경우
-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예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

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9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

제2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은 별표의 기금조성계획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한다.

③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25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자금지원) ① 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계획)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2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은 제27조의 사업계획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관리상황 보고) 위원장은 매년 12월 중 해당 연도의 기금관리상황을 결산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기금관리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제31조(기금의 존속기간)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위원회는 제9조의 위원회로 한다.

제4장 보칙

제3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기 금 조 성 계 획 (제21조 관련)

(단위 : 백만원)

기 간	기 금 액	비 고
1995 ~ 2004	1,000	이자수익금 포함

남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506,000

(단위:천원)

-혼불문학상제정	50,000
-혼불문화행사	7,000
-단군성전 중간 계단정비	20,000
-남원향교 전통문화학당 지원사업	9,000
-향교 석전대제 봉행	10,000
-향교문화전승보전사업	5,000
-충렬사 향토문화 전승지원	3,000
-남원향교 충효교실 운영	3,000
-운봉향교 충효교실 운영	2,000
-운봉향교 공적비 정비	20,000
-춘향이의 첫날밤 뮤지컬 공연	10,000
-한일 사군자 국제 교류전	5,000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 자원화사업	5,000
-시조 무료강습 운영	2,500
-삼도미술교류전	4,000
-무료가훈씨주기 및 붓글씨 체험	2,500
-만인의사 추모 및 만인정신계승 범시민대회	5,000
-단군대제 및 개천절 기념행사	3,000
-전통회혼례	4,000
-동학아카데미	3,000
-남원 문화대학	7,000
-남원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연등축제	12,000
-남원예술제	20,000
-전국춘향미술대전	15,000
-전국시조경창대회	10,000

-춘향제 기념 학생백일장 대회	2,000
-홍부제 기념 학생백일장 대회	2,000
-남원춘향사진대전	10,000
-서당문화한마당	45,000
-세계적사랑의도시 예술공연초청(베로나시)	30,000
-대한민국춘향국악대전	100,000
-금과강도근전국관소리경연대회	10,000
-악성옥보고거문고경연대회	10,000
-한 여름밤의 상설공연 운영	20,000
-2015년대한민국국악대제및국악대향연, 남골묘 안치식	20,000
-남원관광사진공모전	20,000

○ 연도별 예산

- 2015년 : 506,000 천원
- 2016년 : 507,000 천원 - 2017년 : 508,000 천원
- 2018년 : 509,000 천원 - 2019년 : 509,000 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2015년 : 506,000 천원 (시비 506,000)
- 2016년 : 506,000 천원 (시비 506,000)
- 2017년 : 506,000 천원 (시비 506,000)
- 2018년 : 506,000 천원 (시비 506,000)
- 2019년 : 506,000 천원 (시비 506,000)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506,000	507,000	508,000	509,000	509,000	2,539,000
국 비						
도 비						
시 비	506,000	507,000	508,000	509,000	509,000	2,539,000
세 출	506,000	507,000	508,000	509,000	509,000	2,539,000
훈불문학상제정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훈불문화행사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단군성전 중간 계단정비	20,000	20,100	20,100	20,100	20,100	100,400
남원향교 전통문화학당 지원사업	9,000	9,100	9,100	9,100	9,100	45,400
향교 석전대제 봉행	10,000	10,100	10,100	10,100	10,100	50,400
향교문화전승보전사업	5,000	5,100	5,100	5,100	5,100	25,400
충렬사 향토문화 전승지원	3,000	3,100	3,100	3,100	3,100	15,400
남원향교 충효교실 운영	3,000	3,100	3,100	3,100	3,100	15,400
운봉향교 충효교실 운영	2,000	2,100	2,100	2,100	2,100	10,400
운봉향교 공적비 정비	20,000	20,100	20,100	20,100	20,100	100,400
춘향이의 첫날밤 뮤지컬 공연	10,000	10,100	10,100	10,100	10,100	50,400
한일 사군자 국제 교류전	5,000	5,100	5,100	5,100	5,100	25,400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 자원화사업	5,000	5,000	5,100	5,100	5,100	25,300
시조 무료강습 운영	2,500	2,500	2,600	2,600	2,600	12,800
삼도미술교류전	4,000	4,000	4,100	4,100	4,100	20,300
무료기훈씨주기 및 붓글씨 체험	2,500	2,500	2,600	2,600	2,600	12,800
만인의사 추모 및 만인정신계승 범시민대회	5,000	5,000	5,100	5,100	5,100	25,300
단군대제 및 개천절 기념행사	3,000	3,000	3,100	3,100	3,100	15,300
전통회흔례	4,000	4,000	4,100	4,100	4,100	20,300
동학아카데미	3,000	3,000	3,100	3,100	3,100	15,300
남원 문화대학	7,000	7,000	7,100	7,100	7,100	35,300
남원시민과함께하는 전통문화연등축제	12,000	12,000	12,100	12,100	12,100	60,300
남원예술제	20,000	20,000	20,000	20,100	20,100	100,200
전국춘향미술대전	15,000	15,000	15,000	15,100	15,100	75,200
전국시조경창대회	10,000	10,000	10,000	10,100	10,100	50,200
춘향제 기념 학생백일장 대회	2,000	2,000	2,000	2,100	2,100	10,200

홍부제 기념 학생백일장 대회	2,000	2,000	2,000	2,100	2,100	10,200	
남원춘향사진대전	10,000	10,000	10,000	10,100	10,100	50,200	
서당문화한마당	45,000	45,000	45,000	45,100	45,100	225,200	
세계적사랑의도시예술공연초청비용(시)	30,000	30,000	30,000	30,100	30,100	150,200	
대한민국춘향국악대전	100,000	100,000	100,000	100,100	100,100	500,200	
금강강아치전국민소리경연대회	10,000	10,000	10,000	10,100	10,100	50,200	
약성옥보고거문고경연대회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한 여름밤의 상설공연 운영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대한민국국악대제및국악대향연 납골묘 안치식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남원관광사진공모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506,000	507,000	508,000	509,000	509,000	2,539,000
	국 비						
	도 비						
	시 비	506,000	507,000	508,000	509,000	509,000	2,539,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기 타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 법 예 고

남원시 공고 제 2015-823호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해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축제의 범위를 정함
- 나. 축제육성위원회 관한 사항
- 다. 지역축제 재정 지원 및 관리 방안을 정함
- 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정함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불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07),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담당자 이윤태(전화 : 620-57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6.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1. 제정이유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해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축제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나. 축제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 다. 지역축제 재정지원 및 관리 방안을 정함 (안 제11조)
- 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함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6. . ~ 2015. 7.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별첨(조례안 끝에 첨부)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해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지역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제3조(지역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2.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3. 바래봉 철쭉제
4. 봉화산 철쭉제
5. 황산대첩제
6.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제4조(지역축제의 육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축제 관광의 발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정공무원, 교수, 사회단체 임직원
2. 문화예술·축제·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
3. 지역 언론인과 축제 관련 기획·체험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개최결과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 지역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질병, 장기간 출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축제의 추진 주체자는 다음 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의 추진 주체자는 지역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지역축제 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와 별도로 축제관광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 및 용역,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시장은 지역축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1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30,000

(단위:천원)

(비 고)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20,000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15,000	
-바래봉 철쭉제	15,000	
-봉화산 철쭉제	10,000	
-황산대첩제	40,000	격년제개최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	10,000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20,000	

○ 연도별 예산

- 2015년 : 130,000 천원
- 2016년 : 90,000 천원 - 2017년 : 130,000 천원
- 2018년 : 90,000 천원 - 2019년 : 130,000 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2015년 : 130,000 천원 (시비 130,000)
- 2016년 : 90,000 천원 (시비 90,000)
- 2017년 : 130,000 천원 (시비 130,000)
- 2018년 : 90,000 천원 (시비 90,000)
- 2019년 : 130,000 천원 (시비 130,000)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30,000	90,000	130,000	90,000	130,000	57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30,000	90,000	130,000	90,000	130,000	570,000	
세 출	130,000	90,000	130,000	90,000	130,000	570,000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바래봉 철쭉제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봉화산 철쭉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황산대첩제	40,000		40,000		40,000	120,000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30,000	90,000	130,000	90,000	130,000	57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30,000	90,000	130,000	90,000	130,000	57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기 타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견제출
------------	------------------------------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